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기획재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7월 22일, 윤준병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2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4. 11. 1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소위원회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원회의(2024. 11. 15.)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원회의(2024. 11. 18.)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소위원회의(2024. 11. 19.)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소위원회의(2024. 11. 20.)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소위원회의(2024. 11. 21.)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소위원회(2024. 11. 22.)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소위원회(2025. 11. 20.)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소위원회(2025. 11. 24.)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소위원회(2025. 11. 25.)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소위원회(2025. 11. 26.)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소위원회(2025. 11. 30.)

상정, 의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2025. 11. 30.)

상정, 찬반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윤준병의원)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했으며,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줄곧 OECD 회원국 중 유일한 0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저출

생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의 추진과 함께 자녀 출산·양육 등에 대한 기업 및 국가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 현행법에서는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규정을 통하여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을 장려하고, 경력단절 여성 등이 경제활동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상시근로자(이하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그 증가 인원 수에 400만원~1,55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청년등상시근로자에 대한 고용활성화를 위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출산을 장려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증가 인원 수에 600만원~1,75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증액하는 한편,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1항 및 제104조의34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검토보고서 참조.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박수영)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동 개정안 등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생략.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